

## 19. 재소자용 수의착용 사건

<헌재 1999. 5. 27. 97헌마137 등 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 판례집 11-1, 653>

###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미결수용자에게 수사 또는 재판받을 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교도소장의 행위를 위헌으로 선언한 사건이다.

청구인들이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의 장은, 수용시는 물론 수사 및 재판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계류 중 집행유예 또는 보석결정으로 모두 석방되었다.

### 나.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미결수용자에게 수사 또는 재판받을 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부분은 위헌으로 취소선언을 하였고, 다만 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 청구인들이 석방되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더라도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고, 수사 또는 재판에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반면, 미결수용자에게 사복을 입도록 하면 의복의 수선이나 세탁 및 계절에 따라 의복을 바꾸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기도하거나 흥기등 소지 금지품이 반입될 염려 등이 있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에게 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구금 목적의 달성,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정당성·합리성을 갖춘 재량의 범위 내의 조치이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그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다. 사후경과

헌법재판소에 이 심판청구가 계류된 이후, 법무부는 1999. 3. 4. 수사 또는 재판 시에 미결수용자가 사복을 입을 수 있게 새로 지침을 만들었다.

국회는 위 위헌 결정에 따라 1999. 12. 28 법률6038호로 행형법을 개정, ‘교도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의류, 침구 기타 생활용품 및 음식물의 자비부담을 허가할 수 있고, 미결수용자가 법률이 정하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의류 및 신발의 자비부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미결 수용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였다.